

<p>이라 함은 별표에서 말하는 차집관거와 하수관거를 말한다“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제1항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사항”으로 함. ○ 제12조제2항중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수·사용금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개별법령 및 특별법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사용제한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함. ○ 제14조제1항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사항”으로 함. ○ 제1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관리한다”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로 함. ○ 제17조제1항 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사항”으로 하고, 제17조제4항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다”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함. ○ 제23조제3항중 “지장을 줄 경우 관련 점용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 점용자에게 관련 점용자와 상호협의를 지시할 수 있다.”를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점용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함. ○ 제28조제1항 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 사항”으로 한다. ○ 제36조 중 “(또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수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37조제1항중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를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광하게 한다”로 하고, 제37조제2항중 “설치한 건축물”을 “설치한 도로·건축물”로 함. ○ 제38조제3항을 삭제함. ○ 제39조제3항을 신설하여 “총괄관리자는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점용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보수공사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함. ○ 제43조중 “제43조(총괄관리)”를 “제43조(가로등의 총괄관리자 등)”으로 하고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를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광하게 한다”로 함. ○ 별표 본문 중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기관의 장 “건설안전관리본부(시설관리공단 위탁)”를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함. 	<p>VIII. 심사결과 수정의결</p> <p>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p> <p>.....</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地下道商街管理條例案 등 2건의 조례안을建設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権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1조중 “지하도에 설치한 상가”를 “지하도상가”로 한다.</p> <p>안 제9조제3항중 “점포의 위치변경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때 또는 점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도를 요구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30일이내 점포를 비우거나 또는 90일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를 “일시적으로 점포의 사용제한을 필요로 하는 때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점포를 비워야 한다.”로 한다.</p> <p>안 제11조제1호중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90일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p>
---	--

<p>필요한 경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90일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임차인의 시설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가”라 함은 지하도와 함께 설치한 점포와 이를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의 부대시설 및 광고물·자판기 등의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3. “관리인”이라 함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p>제 3 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 4 조(점포의 임대) ①관리인은 상가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 연장 또는 단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 5 조(임차인 선정) ①임차인의 모집은 공개</p>	<p>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는 종전의 임차인(종전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p> <p>②관리인은 임차인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이 1에 해당하는 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관리인과의 점포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제 6 조(임대료 등) ①임차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보증금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매3년마다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의 25퍼센트 2. 임대료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 3. 관리비 : 관리인이 별표의 관리비산정기준 표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p>②제1항의 임대료 등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임대료 등을 산정하는 임대면적은 도로부분을 제외한 점포 및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한다.</p> <p>⑤임대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100원미만은 절사한다.</p> <p>제 7 조(임대료등의 연체요율 등) ①점포의 임차인은 임대료등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p>
--	---

<p>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관리인은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시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제1항의 연체료를 공제할 수 있다.</p> <p>제 8 조(임차권의 양도)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금원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p> <p>②임차인의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9 조(임차인의 의무) ①임차인은 임차한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에 과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자체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과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 비용 상당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점포의 사용제한을 필요로 하는 때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포를 비워야 한다.</p> <p>④임차인은 임차한 시설을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⑤임차인은 지하도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도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3. 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기타 지하도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 <p>제10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상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p>	<p>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 등 취급업종 2.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종 3. 총포·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종 4. 소음, 진동 및 먼지등을 일으키는 공해업종 5. 인화물질, 위험물 및 어폐류 등 악취 등을 수반하는 공해업종 6. 기타 타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과 지하도 시설물 및 통행인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 또는 관리인이 특히 금지하는 업종 <p>제11조(임대차계약 해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 2.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4. 임대료 등 또는 기타 각종 납부금을 90일이상 연체하였을 때 5. 제9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의무 및 임차인의 행위제한 사항 위반 또는 이 조례 등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p>②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90일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임차인의 시설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차인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간에 체결한 계약은 이</p>
---	---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임대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 계약시의 임대보증금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과 종전관리회사의 임대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한다.
---	---

[별표]

관리비 산정기준표(제6조관련)

관리비 항목	부과기준	부과액 산출	비고
전기사용료	실사용료	Kw당 단가×임대면적	차액은 관리인 부담
상하수도료	임대면적	$\frac{\text{총비용}}{\text{총면적}} \times \text{임대면적}$	차액은 관리인 부담
경비·청소비용	임대면적	$\frac{\text{총비용}}{\text{총면적}} \times \text{임대면적}$	차액은 관리인 부담
방역소독비	임대면적	$\frac{\text{총비용}}{\text{총면적}} \times \text{임대면적}$	차액은 관리인 부담
화재보험료	임대면적	$\frac{\text{총비용}}{\text{총면적}} \times \text{임대면적}$	차액은 관리인 부담
오물수거료	임대면적	$\frac{\text{총비용}}{\text{총면적}} \times \text{임대면적}$	차액은 관리인 부담
정화조청소비	임대면적	$\frac{\text{총비용}}{\text{총면적}} \times \text{임대면적}$	차액은 관리인 부담
냉난방비	임대면적	$\frac{\text{총비용}}{\text{총면적}} \times \text{임대면적}$	차액은 관리인 부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임대면적	$\frac{\text{총비용}}{\text{총면적}} \times \text{임대면적}$	전액 임차인 부담
기타 특별히 정하는 비용	-	계약당사자간 협의시행	-

※ 총면적 : 지하도상가 총면적(공용면적+총임대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호중 “설치한”을 “공동구로 설치
 한”으로 한다.
 안 제3조제6호중 “버스전용차 등에서의 위반

차량 등을”을 “위반차량 등을”로 한다.
 안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하수도시설물”이라 함은 별표에서 말하
 는 차집관거와 하수관거를 말한다.
 안 제5조제1항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
 항을”을 “제도 및 정책사항을”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중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수·사용금지 등을 실시하여야 한

<p>다.”를 “개별법령 및 특별법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p> <p>안 제14조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사항”으로 한다.</p> <p>안 제1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관리한다.”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를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로 한다.</p> <p>안 제17조제1항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사항을”로 한다.</p> <p>안 제17조제4항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다.”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p> <p>안 제23조제3항중 “지장을 줄 경우 관련점용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 절용자에게 관련 절용자와 상호협의를 지시할 수 있다.”를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절용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p> <p>안 제28조제1항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을 “제도 및 정책사항을”로 한다.</p> <p>안 제36조중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수리를 포함한다)”로 한다.</p> <p>안 제37조제1항중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를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게 한다.”로 한다.</p> <p>안 제37조제2항중 “설치한 건축물”을 “설치한 도로·건축물”로 한다.</p> <p>안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p> <p>안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총괄관리자는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절용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보수공사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안 제43조중 제43조의 제목 “(총괄관리)”를 “(가로등의 총괄관리자 등)”으로 하고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를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게 한다.”로 한다.</p> <p>별표중 자동차전용도로란중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위탁)”를 “건설안전관리본부</p>	<p>장”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도로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안</p> <p>제1장 총 칙</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적용대상 주요시설물)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2. 자동차전용도로 3. 공동구 4. 교통관리시설물 5. 하천복개구조물 6. 가로등 7. 하수도시설물 8. 가로수·녹지 9. 노상주차장 10. 기타 도로부속물 <p>제 3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시설물”이라 함은 한강상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 일반교량, 지하보·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3.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통신, 에너지관 등)을 공동수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거 공동구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표지”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의 도로표지규칙 제2조 각호의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기타 표지를 말한다. 5. “도로표지시스템”이라 함은 도로표지의 위치·내용·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도로표지를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	--

<p>6. “무인단속시스템”이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무인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7. “교통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전기, 전자, 통신, 제어, 컴퓨터, 기계 등을 통합하여 만든 지능형시스템을 이용, 교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p> <p>8. “교통전광판”이라 함은 도로상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 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시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9. “하천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육천, 청제천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p> <p>10. “하수도시설물”이라 함은 별표에서 말하는 차집관거와 하수관거를 말한다.</p> <p>제 4 조(주요시설물의 관리구분 및 책임) 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요시설물의 관리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한다.</p> <p>②시장은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별표에 규정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위임한다.</p> <p>③별표에 규정된 관리기관의 장과 자치구청장(이하 이들을 합하여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있어 그 책임을 진다.</p> <p>④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개별법령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사무 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도로 및 도로시설물</p> <p>제 5 조(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총괄관리자 등) ①시장은 도로국장(이하 이 장에서 “총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도로 및 도</p>	<p>로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리하게 한다.</p> <p>②시장은 도로 및 한강상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 6 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p> <p>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관리기관의 장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총괄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포함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7 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기관의 장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 육안 및 휴대 장비 등에 의한 점검</p> <p>2. 정기점검 : 2년에 1회이상(교량은 매년 1회이상) 육안 및 간단한 점검 기계 및 기구 등으로 점검</p> <p>3. 긴급점검 : 순찰 또는 일상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나 태풍·집중호우·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 등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점검</p> <p>②안전점검의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 정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 8 조(안전점검을 위한 인력·장비의 확보)</p> <p>①관리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p>
---	---

<p>②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장비의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9조(정밀안전진단 실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년이상 경과된 도로시설물로서 특별법의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5년에 1회이상 2.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도로시설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이전 6월이내 3. 안전점검 결과 도로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없이 <p>제10조(시설물 상태의 구분) ① 관리기관의 장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위험정도에 따른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급: 안전 및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급: 경미한 손상은 있으나 안전등에 문제점이 없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 3. C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4. D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강재의 파로균열, 콘크리트의 진단균열, 침하 등)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 한 상태로 사용 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 5. E급: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협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p>③ 제2항에 규정한 안전등급에 대한 관정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상의 세부 실시요령·표준양식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별·부재별·규모 등에 맞도록 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p> <p>제11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p>	<p>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2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시설물별 안전등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계획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로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자체없이 개별법령 및 특별법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고관리체계 확립) 관리기관의 장은 도로시설물의 결함, 기타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도로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습체계·요령·복구방법 등 사고관리체계를 사전에 확립하여야 한다.</p> <p>제3장 자동차전용도로</p> <p>제14조(자동차전용도로의 총괄관리자) 시장은 도로국장(이하 이 장에서 "총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동차전용도로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사항을 관掌하게 한다.</p> <p>제15조(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 및 위탁) ①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는 별표에서 정하는 관리기관의 장이 하되, 자동차전용도로상의 녹지·가로수·도로표지·가로등 및 청소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총괄관리자는 관리기관의 장 및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6조(준용)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위험시설물의 지정, 보수·정비 등의 실시, 사고관리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내지 제13조를 준</p>
---	---

<p>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공동구</p> <p>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시장은 도로국장으로 하여금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②시장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하 이 장에서는 “관리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별로 각 점유자(이하 이 장에서 “점용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점용자는 공동구 점용면적비율 등에 의하여 비용을 분담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공동구 본체와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및 비용징수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관리기관의 장은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기타 관련도면을 기초로 현장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실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면을 지체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도면은 각종 시설의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교점부 상세도면 기타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도면에는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공동구의 주요지점에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9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공동구등의 점검) ①관리기관의 장 및</p>	<p>점용자는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점용시설·부속시설(이하 “공동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 및 점용자는 매일 순찰하여 누전, 화재, 누수, 시건장치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조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점용자가 공동구 등을 점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점검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21조(정밀안전진단) 관리기관의 장은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다.</p> <p>제22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구) ①관리기관의 장은 공동구등의 안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소관점용시설·부속시설(이하 이 장에서 “점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요구를 받은 점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공사등의 승인) ①점용자는 점용시설등에 관한 공사 또는 부속시설의 개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할 때는 사전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로 인하여 공동구본체·부대시설 또는 다른 점용자의 점용시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될 경우 승인 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사시행 점용자는 다른 점용자의 점용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점용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공동구 본체의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4조(공사의 시행) ①공동구 본체의 내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공사시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	---

<p>②관리기관의 장이 공동구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점용시설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점용자는 공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사완료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5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점용자는 누전, 화재, 누수 등에 의해 점용시설 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즉시 당해 시설물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에 관한 절차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경우, 해당 점용자는 조치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긴급사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조치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6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점용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p> <p>제27조(보안에 관한 사항) 점용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따른 보안 및 방재상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공동구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9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총괄관리자는 도로표지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 기관의 장이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표지의 신설·변경 2. 도로표지의 세척·도색 등의 정비 3. 도로표지 장애시설 정비(신호등·가로수 등) 4.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p>제30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총괄관리자는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표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구축된 도로표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③관리기관의 장은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p>
<p>제5장 교통관리시설물</p> <p>제28조(교통관리시설물의 총괄관리자 등) ①시장은 교통관리실장(이하 이 장에서 “총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도로표지·교통관리시스템·무인단속시스템 등 교통관리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계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게 한다.</p> <p>②도로표지·교통관리시스템·무인단속시스템 등 교통관리시설물의 설치·안전 및 유지관리는 별표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시행한다.</p> <p>③시장은 도로표지·도로표지시스템·교통관리시스템·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31조(도로표지의 점검)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양호한 도로표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시 점검반의 구성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검반 구성: 점검반은 도로표지 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2. 점검의 방법: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건설교통부령) 제2조 내지 제13조의 사항을 점검한다. <p>③도로표지의 점검시에는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유지하여야 한다.</p> <p>제32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업</p>

<p>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 관리 2. 통신선로 관리 3. 기타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 <p>제33조(교통관리시스템 관리업무 등) ①교통관리시스템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 시설 관리 2. 교통전광판 및 통신선로 관리 3. 기타 교통관리시스템 설치도로의 도로상황관리 <p>②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업무, 긴급구조업무, 교통방송, 홍보업무, 공사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관련사항을 교통관리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4조(교통관리시스템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및 보수) ①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p> <p>②점검결과 또는 기타 사유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 보수의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p> <p>제35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등) 제32조 제3호에 따른 도로환경변화 분석과 운영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시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36조(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등)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의 도로의 굴착, 점용을 허가(신고 수리를 포함한다.)하는 부서의 장은 허가시 무인단속시스템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장 하천복개구조물</p> <p>제37조(하천복개구조물의 총괄관리자 등) ①시장은 하수국장(이하 이 장에서 "총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천복개구조물(이하 "복개구조물"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리하게 한다.</p> <p>②복개구조물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p>	<p>장에서 "점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p> <p>③시설물의 점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주차장, 적 환장 포함)인 경우에는 도로국장이 점용자가 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유지관리한다. 2.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 <p>④총괄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점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제38조(복개구조물의 안전점검 등) ①점용자는 복개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복개구조물의 본체를 특별법의 2종시설물에 준하여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점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 본체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9조(시설물의 순찰 등) ①점용자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순찰을 실시하여 복개구조물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점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물의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 실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총괄관리자는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점용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보수공사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40조(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점용자는 소관 복개구조물의 본체와 시설물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점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p>제41조(하천복개공사 시행 등)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고 하천법 제11조의2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제42조(서류비치) 점용자는 순찰, 안전점검, 유지보수, 개량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되, 시설물 관리카드는 영구보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찰일지, 안전점검 일지 2. 작업일지 3. 시설물관리카드 4. 기타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가로등</p> <p>제43조(가로등의 총괄관리자 등) 시장은 도로 국장으로 하여금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리하게 한다.</p> <p>제44조(가로등의 관리위임)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상의 가로등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한강상교량, 터널, 지하보차도, 고가차도, 입체교차로의 가로등은 제외한다.</p> <p>제45조(유지관리) ①가로등은 야간의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등은 도로의 조명수준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청소, 광원의 교환, 배선 및 배선기기보수, 사고주복구 등 정비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도로조명시설이 완성되었을 때는 장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명시설에 관한 자료 및 유지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 칙</p> <p>제46조(개별조례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하수도시설물·노상주차장·가로수 및 녹지시설 등 주요시설물은 개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7조(기타 도로부속물관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도로 부속물은 별표에 의한 관리기관의 장 및 자치구청장이 이를 책임관리한다.</p> <p>제4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p>	<p>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시설물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와 본 조례의 규정이 다를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율령대교위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구 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관리기관의 장
서 울 특 별 시 도	○ 차도부분	건설안전관리본부장
	○ 청소	자치구청장
	○ 보도(축구포함)의 유지관리	
교 양	○ 한강상교량 ○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	건설안전관리본부장
터 널	○ 터널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고 가 차 도	○ 서울특별시도상의 고가차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입 체 교 차	○ 입체교차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 하 차 도	○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차도 및 지하보·차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 하 보 도	○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자치구청장
보 도 육 교	○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자치구청장
공 동 구	○ 공동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복 개 구 조 물	○ 복개구조물(자치구도상의 복개구조물제외) 단, 청 계천의 광교~신설동 구간과 옥천의 서소문로 경계~한강합류 지점 구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유지관리	용도별점용자
하 수 도	○ 차길관거	하수국장
	○ 하수관거	자치구청장
자 동 차 전 용 도로	○ 도로 및 도로시설물(지하보도, 보도육교 제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 절개지 및 법면	
	○ 청소·가로등·도로표지·교통관리시스템·녹지·가로수 및 기타 도로부속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가 로 등	○ 한강상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의 가로등	건설안전관리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상의 가로등	자치구·청장
도로 표지	○ 문안검토	교통관리실장
	○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무인 단속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 보도(단속카메라), 버스전용차로(루프 걸지선) 등	교통관리실장
기타 도로 부속물 및 도로 안전시설	○ 가드레일·차량진입금지시설·파속방지턱·낙석방지망·절개지·법면 등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부속물 및 도로안전시설	자치구청장

1. 비고 : 자치구청장 유지관리시설

- ① 이 조례에 의거 위임받은 시설
- ② 자치구도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
- ③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위임받은 시설

(14時 53分)

36. 서울特別市都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整備委員會 委員長 提案)
37.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
市長 提出)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特別市都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